

2016년 4월 23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사법부그룹웨어(<http://g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6. 4. 25.(월) 10:00 이후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6. 4. 25.(월) 10:00 ~ 2016. 4. 27.(수) 17:00
방법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6. 5. 11.(수) 11:00 이후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사법부그룹웨어 정답이의제기 전용 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인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가 아닌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 ④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문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②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 ②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도 그 법적 성질은 보통의 최고와 같기 때문에 그 소송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문 4】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④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청구권을 가진다.

【문 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의 사망이나 파산과 달리 본인의 사망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부여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② 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항상 자기를 위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6】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②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 ③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인 권리는 이를 상속, 보존,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당해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문 7】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각허가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②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문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그 후에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문 9】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품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의 성질을 통해서 그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③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④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부목적물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문1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소구의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문12】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귀속 등에 관한 민법 제5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 ④ 甲이 권한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1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14】 동시이행의 관계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 ②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연체 차입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
- ④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결국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15】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면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진행된다.
- ④ 부재자의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문16】 점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의 경우도 포함한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④ 일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7】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② 이혼의 당사자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 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 ④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소송 절차 내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18】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이상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 ②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문19】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②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문20】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만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 ② 동물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봐야 한다.
- ④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도살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1】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한이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참여사무관등이 직접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를 다룰 수 있을 뿐이다.
- ③ 송달료가 전혀 예납되지 아니하여 송달료 예납을 명하는 보정명령 자체를 송달할 비용도 없고 또한 소장에 팩스번호나 전자우편주소의 기재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보정명령도 불가능한 경우, 소장의 송달불능의 한 형태로 보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법인인 경우,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에는 소 제기 시에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문22】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사소송법상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 ②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증인도 될 수 없다.
- ③ 보조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더라도 피참가인이 결석하면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는다.
- ④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해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즉 피고 또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간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시적인 승낙이 없으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이다.
- ② 소취하간주 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접수인이 누락된 채 서류가 기록에 편철된 경우,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날짜로 접수인을 날인한다.
- ④ 변호사·법무사 및 관공서·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서 그 서류 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는 봉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문24】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한 법인의 대표자의 교체 내지 자격상실에 의해서 소멸된다.
- ②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 받은 후 사임하였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따로 기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와 그 소송에 관계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의 영수, 공격방어를 위한 상계권, 취소권 등 사법상의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④ 소송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문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되므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는 이상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보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다고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문26】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그 취하되거나 감축된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그 액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 ②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그 액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 ③ 본안소송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 외에는 수 개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없다.
- ④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27】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 ② 판결선고 후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소송구조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도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 승계·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소송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2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변론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할 수 있는 변론과 증거조사의 범위는 그가 미리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간주할 수 있다.
- ③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29】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서 대여금의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 전에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이 된다.
- ②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서 이자는 차주가 금전을 지급 받은 당일부터 기산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기산한다.
- ③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금반환청구에 있어서 법정이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당일부터 기산한다.

【문30】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송달 처분이 있는 후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예컨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판명되거나 그가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소송서류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사람이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 ③ 화해권고결정 또는 결정조서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문31】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서증의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서증의 제출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문서송부촉탁에 있어서는 문서의 소지자가 송부촉탁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수단이 없다.
- ③ 제출된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 명의의 문서인 경우, 상대방이 ‘부지’라고 인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그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그 자신의 것인지 및 그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하고,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 부인하는 취지라면 서증 제출자에게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거자료가 된다.

【문32】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청구원인을 소명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도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된다.
- ③ 독촉절차에도 관련사건의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이의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내려진 것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33】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공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기일의 변론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신청인이 작성된 정본·등본·초본을 교부 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장부의 비고란에 교부불능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보관하고,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한다.
- ③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34】 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 전자적 송달을 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만이 유효하다.
- 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송달영수인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사용자등록을 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종이기록사건에서는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했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가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로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문35】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하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접수담당자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장에게 허부 결정을 받도록 한다.
- ③ 원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취하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취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④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바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문36】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항소할 수 있다.
- ③ 항소인이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그 수납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문37】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정신청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다.
- ② 조정절차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조정참가인은 소송으로 이행·복귀된 후에는 참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송절차에서 다시 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문38】 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이 되는 보전처분 등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되는 이의, 취소사건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 ③ 민사조정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 포함)은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
- ④ 보조참가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때에는 전자기록사건이 되지 않는다.

【문39】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연기함이 없이 그 기일에 선고할 수 있다.
- ③ 판결을 경정함에 있어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
- ④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재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별도의 판결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문40】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를 첨부한다.
- ③ 판결선고 후 항소장의 소송목적의 값을 검토하다가 1심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인지가 부족함을 발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인지보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지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양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모든 경우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 2】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乙의 현금을 훔친 후 그대로 봉투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甲을 폭행하여 위 봉투에 넣어놓았던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이므로 乙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밤늦게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야간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공사대금 채권을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④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4】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취상태의 자동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별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
- ②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 ③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

【문 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새벽 5시경 A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회칼로 A를 위협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A를 결박한 채로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A가 결박을 풀고 도주하기에 A를 쫓아가 시비하다가 회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은 A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부근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A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준강도범을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준강도’를 할 목적은 있었던 것이므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주차된 A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A 및 그 친구인 B와 대치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 B를 폭행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이 성립한다.

【문 6】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추후 당초의 공무원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조합임원이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③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어느 정도라도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7】 타짜인 피고인은 정마담과 공모하여 재력가 A와 그 친구인 B, C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었다.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저녁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셋다’ 도박을 하였는데, C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A, B와 계속 도박을 하다가 자정이 넘을 무렵부터 화투를 교체하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A, B가 들고 있는 화투 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A로부터 3억 원, B로부터 2억 원의 도금을 획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원래 사기도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자정까지는 정상적인 도박행위도 하였으므로 도박죄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② C에 대하여도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A, B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 ④ A, B에 대하여는 그 피해법익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8】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를 처분한 경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중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③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명예훼손죄의 경우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④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문1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고소의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법하다.
-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문12】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②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후 그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③ 현행법상 형사상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13】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문14】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15】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문16】정식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구형대로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의 원인이 된다.

【문17】증거동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18】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② 법원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문1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문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가능하나 배당요구 중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한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부적법하다.
- ③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이다.

【문 2】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다룰 수 없다.
- ② 제3자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방법이 적법한 경우에는 물론, 그 집행이 다른 이유로 집행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조건성취사실 또는 승계사실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수통·재도부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도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기 위하여 또는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문 3】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부동산 인도명령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은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설혹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4】 자동차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 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요구중기 후에 경매를 신청한 자는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 중 집행관보관명령은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도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 ③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지명령이나 작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 ④ 금지명령·작위명령은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기간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이다.

【문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②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③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에 대하여는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④ 전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에서 우선채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전세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된다.
- ③ 근저당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 ④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 번만 우선채권의 범위에 산입된다.

【문 8】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 ④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했다면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9】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문10】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액수를 표준으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한다.
- ②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사유를 진술한 이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국한된다.
-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에 배당을 받을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요구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신청 당시 이미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 등의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 소명하면 족하고 그 존재를 증명해야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문12】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 ③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된 절차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중경매에서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취하된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문1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경정결정본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압류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14】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 ④ 채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명령에 선행하는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서로 경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15】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②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에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문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 ② 제1압류명령송달과 제2압류명령송달의 사이에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제1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제2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대여금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7】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③ 주택임차인은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있다.
- ④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 바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乙이 동일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乙이 신청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8】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등재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등재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19】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효시키는 제도이다.
- ②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③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된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20】 다음 중 집행비용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유체동산의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
-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 집행문부여신청비용
- ③ 보정명령의 송달료,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 ④ 매각기일 출석비용,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부동산등기 · 공탁 20문】

①책형

【문 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등기관이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 끝부분에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축사 자체의 연면적이 200㎡이하라면 비록 부속건물인 퇴비사가 존재하여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를 초과하더라도 이 특례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붕은 없어도 된다.
- ④ 이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정보이어야 한다.

【문 2】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서면 중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에 송신할 수 없는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등기신청위임장
- 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위임장
-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④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 3】 국유재산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②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③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 ④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문 4】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 ②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③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5】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 ②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다.
- ③ 처분위임장은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받을 수 있다.
- ④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관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도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문 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한다.
-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뿐만 아니라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한다.
- ③ 甲·乙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정하여야 한다.
-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문 7】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 ‘계약의 일부 양도’ 또는 ‘계약가입’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 ④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갑구의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문 8】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가 해당 가처분결정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가처분채무자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였다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④ 甲(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매수인)이 甲 소유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한 후 그 지위를 반대급부의 이행 전에 丙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丙이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丙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문 9】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 ④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한다.

【문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상의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 ③ 종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새로 축조된 건물에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저당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저당권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일반적인 저당권설정등기와 같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축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다.

【문11】 다음 중 공탁신청 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탁은?

- ① 영업보증공탁
-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 ③ 가압류해방공탁
-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문12】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문13】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이다.
-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만 첨부하여도 된다.
-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서, 공탁물 출급 · 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 · 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문14】 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는 양수인이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④ 공탁자는 보전처분 결정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담보취소절차 없이 결정 전 취하증명 또는 각하결정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문15】 공탁물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어도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 ② 공탁자가 공탁통지서나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6】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乙'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정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가 될 것이다.
-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문17】 변제공탁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로 변제공탁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 ②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④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18】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에 대한 丙의 압류·추심명령(압류채권액 6천만 원, 압류채무자 乙)을 송달받고, 채무 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응하는 6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4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甲은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원인소멸을 이유로 6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9】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공탁자는 그것을 입증하고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일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문20】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와 경합이 없어도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와 경합이 없어도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正本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23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사법부그룹웨어(<http://g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16. 4. 25.(월) 10:00 이후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16. 4. 25.(월) 10:00 ~ 2016. 4. 27.(수) 17:00
방법 :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16. 5. 11.(수) 11:00 이후
[사법부그룹웨어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에 게시

※ 사법부그룹웨어 정답이의제기 전용 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 ②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도 그 법적 성질은 보통의 최고와 같기 때문에 그 소송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문 2】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의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④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될 정도로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청구권을 가진다.

【문 3】 신의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인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가 아닌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 ④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문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②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만, 그 후에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문 6】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품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의 성질을 통해서 그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③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④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부목적물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문 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소구의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 ③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 8】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의 사망이나 파산과 달리 본인의 사망을 통해서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부여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② 대리인은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의사표시가 항상 자기를 위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 9】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②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 ③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인 권리는 이를 상속, 보존,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당해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문10】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각허가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각허가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②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문1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12】 동시이행의 관계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 ②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연체 차입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
- ④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결국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13】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면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진행된다.
- ④ 부채자의 제2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문1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문15】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귀속 등에 관한 민법 제5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 ④ 甲이 권한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16】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이상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 ②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그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문17】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②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문18】 점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의 경우도 포함한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던 것이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④ 일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9】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② 이혼의 당사자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 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 ④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협의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소송 절차 내에서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협의를 효력이 발생한다.

【문20】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만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 ② 동물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봐야 한다.
- ④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도살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1】 참여사무관등의 소장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보정기한이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참여사무관등이 직접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이를 다룰 수 있을 뿐이다.
- ③ 송달료가 전혀 예납되지 아니하여 송달료 예납을 명하는 보정명령 자체를 송달할 비용도 없고 또한 소장에 팩스번호나 전자우편주소의 기재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보정명령도 불가능한 경우, 소장의 송달불능의 한 형태로 보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법인인 경우,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에는 소 제기 시에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피고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분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문22】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사소송법상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 ②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고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증인도 될 수 없다.
- ③ 보조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더라도 피참가인이 결석하면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는다.
- ④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해 종래의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즉 피고 또는 원고)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간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명시적인 승낙이 없으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이다.
- ② 소취하간주 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접수인이 누락된 채 서류가 기록에 편철된 경우,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날짜로 접수인을 날인한다.
- ④ 변호사·법무사 및 관공서·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서 그 서류 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는 봉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문24】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한 법인의 대표자의 교체 내지 자격상실에 의해서 소멸된다.
- ②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 받은 후 사임하였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따로 기일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와 그 소송에 관계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제의 영수, 공격방어를 위한 상계권, 취소권 등 사법상의 형성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④ 소송대리인이 한 신청과 취하·포기·인낙·화해 같은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 법률상의 의견 등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문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되므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는 이상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보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다고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이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문26】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서 대여금의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 전에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이 된다.
- ② 대여금반환청구에 있어서 이자는 차주가 금전을 지급 받은 당일부터 기산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당일부터 기산한다.
- ③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금반환청구에 있어서 법정이자에 매대계약을 해제한 당일로부터 기산한다.

【문2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시송달 처분이 있는 후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예컨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판명되거나 그가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소송서류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사람이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 ③ 화해권고결정 또는 결정조서는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문28】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서증의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서증의 제출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문서송부촉탁에 있어서는 문서의 소지자가 송부촉탁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수단이 없다.
- ③ 제출된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 명의의 문서인 경우, 상대방이 ‘부지’라고 인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그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그 자신의 것인지 및 그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하고,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 부인하는 취지라면 서증 제출자에게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거자료가 된다.

【문29】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그 취하되거나 감축된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그 액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 ②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그 액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 ③ 본안소송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 외에는 수 개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없다.
- ④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30】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 ② 판결선고 후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소송구조신청 후 그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승계·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소송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변론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할 수 있는 변론과 증거조사의 범위는 그가 미리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당사자가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간주할 수 있다.
- ③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32】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하서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접수담당자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장에게 허부 결정을 받도록 한다.
- ③ 원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취하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취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④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므로 바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문33】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변론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항소할 수 있다.
- ③ 항소인이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그 수납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문34】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정신청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다.
- ② 조정절차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이송신청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조정참가인은 소송으로 이행·복귀된 후에는 참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송절차에서 다시 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문35】 전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본이 되는 보전처분 등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되는 이의, 취소사건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 ③ 민사조정법·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 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 포함)은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
- ④ 보조참가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때에는 전자기록사건이 되지 않는다.

【문36】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청구원인을 소명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도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된다.
- ③ 독촉절차에도 관련사건의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이의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내려진 것이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37】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공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기일의 변론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신청인이 작성된 정본·등본·초본을 교부 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장부의 비고란에 교부불능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한다.
- ③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38】 전자적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 전자적 송달을 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만이 유효하다.
- 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송달영수인 본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사용자등록을 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종이기록사건에서는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했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가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로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문39】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연기함이 없이 그 기일에 선고할 수 있다.
- ③ 판결을 경정함에 있어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
- ④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재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별도의 판결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문40】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인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②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 지급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를 첨부한다.
- ③ 판결선고 후 항소장의 소송목적의 값을 검토하다가 1심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인지가 부족함을 발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인지보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인지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양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문 1】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주취상태의 자동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된다.
- ②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
- ③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폭행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

【문 2】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새벽 5시경 A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회칼로 A를 위협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A를 결박한 채로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A가 결박을 풀고 도주하기에 A를 쫓아가 시비하다가 회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은 A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부근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A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절도범인이 아니므로 준강도범을 전제로 하는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준강도’를 할 목적은 있었던 것이므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주차된 A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A 및 그 친구인 B와 대치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 B를 폭행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이 성립한다.

【문 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추후 당초의 공무원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조합임원이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③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어느 정도라도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모든 경우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 5】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乙의 현금을 훔친 후 그대로 봉투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甲을 폭행하여 위 봉투에 넣어놓았던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 ④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이므로 乙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6】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밤늦게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양팔을 높이 들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야간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공사대금 채권을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④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7】 타짜인 피고인은 정마담과 공모하여 재력가 A와 그 친구인 B, C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었다.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저녁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셋다’ 도박을 하였는데, C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A, B와 계속 도박을 하다가 자정이 넘을 무렵부터 화투를 교체하고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A, B가 들고 있는 화투 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행위를 계속하여 결국 A로부터 3억 원, B로부터 2억 원의 도금을 획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원래 사기도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자정까지는 정상적인 도박행위도 하였으므로 도박죄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② C에 대하여도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③ A, B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 ④ A, B에 대하여는 그 피해법익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8】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를 처분한 경우,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피고인과 A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1, 2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상호명의신탁관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된 후, 피고인이 분할 후 A 소유인 토지 부분에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한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③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 9】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명예훼손죄의 경우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④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문1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고소의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법하다.
-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문12】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②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후 그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③ 현행법상 형사상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13】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③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문14】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구형대로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제적의 원인이 된다.

【문15】 증거동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법정증언을 반복하는 내용의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16】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문1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18】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② 법원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호인에 대해서는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문1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④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문 1】 자동차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 2】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를 신청한 자는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 중 집행관보관명령은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도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 ③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지명령이나 작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 ④ 금지명령·작위명령은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기간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이다.

【문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②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③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에 대하여는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④ 전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가능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한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부적법하다.
- ③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이다.

【문 5】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다룰 수 없다.
- ② 제3자의이의 소는 강제집행의 방법이 적법한 경우에는 물론, 그 집행이 다른 이유로 집행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조건성취사실 또는 승계사실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수통·재도부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도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기 위하여 또는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문 6】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부동산 인도명령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은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설혹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7】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액수를 표준으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한다.
- ②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사유를 진술한 이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국한된다.
- ③ 우선변채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에 배당을 받을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요구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8】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신청 당시 이미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 등의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 소명하면 족하고 그 존재를 증명해야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문 9】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 ③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된 절차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중경매에서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 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취하된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문10】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에서 우선채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전세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된다.
- ③ 근저당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 ④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 번만 우선채권의 범위에 산입된다.

【문11】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 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 ④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했다면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12】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문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 ② 제1압류명령송달과 제2압류명령송달의 사이에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제1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제2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대여금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③ 주택임차인은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있다.
- ④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 바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乙이 동일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乙이 신청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5】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등재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등재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16】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경정결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압류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17】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 ④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서로 경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18】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②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에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문19】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효시키는 제도이다.
- ②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③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된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20】 다음 중 집행비용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유체동산의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
-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 집행문부여신청비용
- ③ 보정명령의 송달료,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 ④ 매각기일 출석비용,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문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
- ②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③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 2】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
- ②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다.
- ③ 처분위임장은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뿐만 아니라 국내 공증인의 공증도 받을 수 있다.
- ④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라도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문 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한다.
- ②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뿐만 아니라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도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한다.
- ③ 甲·乙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정하여야 한다.
-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문 4】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이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 끝부분에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축사 자체의 연면적이 200㎡이하라면 비록 부속건물인 퇴비사가 존재하여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를 초과하더라도 이 특례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붕은 없어도 된다.
- ④ 이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정보이어야 한다.

【문 5】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 서면 중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에 송신할 수 없는 것은?

- 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등기신청위임장
- 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위임장
-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④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문 6】 국유재산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②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③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 ④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문 7】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 ④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한다.

【문 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조합에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상의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 ③ 종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새로 축조된 건물에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저당권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일반적인 저당권설정등기와 같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축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써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다.

【문 9】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 ‘계약의 일부 양도’ 또는 ‘계약가입’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 ④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갑구의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문10】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지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가 해당 가처분결정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가처분채무자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였다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④ 甲(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매수인)이 甲 소유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한 후 그 지위를 반대급부의 이행 전에 丙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丙이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丙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문11】 공탁물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어도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 ② 공탁자가 공탁통지서나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1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乙'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가 될 것이다.
-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문13】 변제공탁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로 변제공탁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
- ②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은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나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에 따른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경우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④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14】 다음 중 공탁신청 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탁은?

- ① 영업보증공탁
-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 ③ 가압류해방공탁
-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문15】 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문16】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 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이다.
- ③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만 첨부하여도 된다.
- ④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

【문17】 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는 양수인이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④ 공탁자는 보전처분 결정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담보취소절차 없이 결정 전 취하증명 또는 각하결정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문18】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에 대한 丙의 압류·주심명령(압류채권액 6천만 원, 압류채무자 乙)을 송달받고, 채무 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甲은 공탁 후 압류금액에 상응하는 6천만 원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4천만 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 48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甲은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원인소멸을 이유로 6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9】 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공탁자는 그것을 입증하고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④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공탁일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문20】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하여 공탁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와 경합이 없어도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다른 (가)압류와 경합이 없어도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正本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23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6. 4. 23.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X는 젊은 시절 부동산개발업으로 성공하여 수도권 내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X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절세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 한다. X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Y와 모두 성년이 된 甲(장남), 乙(차녀), 丙(막내)의 자녀가 있고, 당시 X는 A건물, A-1건물, B토지, C토지, D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25점】

가.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X는 2014. 7. 7. 장남 甲에게 B토지를 증여하였는데, 증여계약서 작성과 이전등기는 차후에 천천히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X는 2014. 8. 7. 장남 甲에게 그가 구상하고 있는 고물상 사업을 위해 일단 B토지의 점유만은 이전해 주었다. 그 후 X는 장남 甲과 분쟁이 발생하자 B토지를 甲으로부터 되찾아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X는 2014. 9. 1. 甲을 상대로 B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서 점유를 되찾아 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나.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X는 2015. 7. 7. 막내아들 丙에게 일산에 있는 D건물을 증여하면서, ‘丙은 한 달에 한 번 작은 아버지인 W(따로 거주 중)를 찾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돌봐드릴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X는 2015. 8. 7. 위와 같은 증여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 丙에게 D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 丙은 부모인 X와 Y에 대해 부양의무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작은 아버지인 W와의 식사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X가 丙을 상대로 D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D건물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설명하시오. 【15점】

【문 2】 의류판매상인 乙에게 원단을 제공하는 甲은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乙에 대하여 5억 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외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乙은 甲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되었다. 甲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乙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는데, 乙은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친척인 丙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丙은 같은 날 乙의 위 외상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4. 12. 1. 乙과 丙을 상대로 연대하여 위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乙과 丙이 최선의 항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예상될 수 있는 판결의 결과를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문 3】 甲은 2012. 3. 6. 乙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乙은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甲은 자신의 사업자금이 급해지자 2013. 4. 11.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3.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1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30점】

가. 위 기본사안에 추가하여, 사실 甲과 乙사이 2012. 3.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甲의 신용도 보장을 위해 서로 짜고 허위로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인데, 그 후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시켰다. 丙의 입장에서는 채권양수 무렵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나 면밀하게 검토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위 기본사안과 달리, 甲이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4. 15.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만, 채권양도통지서에는 甲과 丙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통지권한도 丙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다. 위 기본사안에 추가하여, 그 후 甲과 丙은 2013. 5. 1.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채무자 乙은 위 합의해제 사실은 모르고 丙에게 채무를 이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채권양도 합의해제 후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 원인 요건사실(특히, 누가 어떠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문 4】 甲은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던 중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X소유의 A농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A농지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했던 甲은 2013. 3. 6. 고향친구이자 평창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乙에게 위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乙은 같은 해 4. 11. X와 만나 A농지를 10억 원에 매수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X는 위 A농지 매도 당시 甲이 乙의 명의로 A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총 25점】

가. 위 기본 사안과 달리, A농지 매매과정에서 甲은 ‘자신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니 乙을 대동하여 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사정을 X에게 말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은 2013. 4. 11. 평창 읍내에서 X와 만나 A농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乙로 체결하고는 당일 甲이 계약금을 포함하여 대금 10억 원을 X에게 지급하고, 乙이 X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받아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A농지 매매의 계약당사자는 누구이며, 현재 A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10점】

나.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이후 甲은 2013. 12.경 사업부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그 무렵 이미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은 자신의 총채권으로 甲소유의 아파트(시가 10억 원)에 피보전 채권 5억 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상태였다. 사업자금이 급해진 甲은 2014. 3. 6. 戊에게 A농지를 9억 원에 매도하고는 등기명의인인 乙로 하여금 戊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甲이 A농지를 戊에게 매도한 것이 채권자 丙에게 사해행위가 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016. 4. 23.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사 소 송 법

【문 1】 소의 취하의 요건과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 보조참가의 요건과 절차, 보조참가인의 지위 및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문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신청서 부분이 피고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위 조정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016년 4월 23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16. 4. 23.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乙은 甲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갔다. 乙은 A은행에 가서 비치된 대출 약정서 용지에 채무자를 乙로, 연대보증인을 甲으로 한 3,000만 원 짜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甲’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소지하고 있던 甲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 대출약정서를 A은행에 제출하여 A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乙은 바로 甲의 인감도장을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이 경우 乙의 죄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특별법 위반은 제외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30점】

【문 2】 甲은 민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甲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로부터 A임야의 소유자인 乙이 위 임야를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그 여부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甲은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기 전에도 乙이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은 사실이었다. 이 때 甲이 위증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30점】

【문 3】 다음 각 사안에 대하여 10줄 이내로 약술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총40점】**

가. 甲은 A로부터 甲이 알고 지내던 공무원 B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甲은 공무원 B에게 A로부터 받은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전부 소비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나. 甲은 A로부터 A가 절취한 골동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B에게 매각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016. 4. 23.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피고인 甲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공소장에는 ‘甲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역 부근의 상호불상 오피스텔 7층 방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증거의 요지와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40점】

- 아 래 -

가.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자백)

나. 피고인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다. 참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기재)

순번	증거방법					참조 사항 등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 조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쪽수	증거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갑		1	1	○	1	○	1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을		1	1	○	1	○	1	

【문 2】 검사는 피고인 甲을 강간치상죄로 구속 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甲은 2015. 6. 3.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대로 1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乙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를 개시하였다.

가. 피고인 甲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10여일이 지난 후 피고인 甲의 변호인 丙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인 甲측의 국민참여재판 희망의 의사 표시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개시거부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개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고를 제기하였다. 검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에 대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나. 만일 피고인 甲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이 되는 시점에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통상 절차로 제1심을 진행하였다면 제1심 법원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다. 만일 위 나.의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히고,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